

제 6 장 서비스무역

제 6.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이른바 비행 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 영역의 모든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문적 설립체를 말하며 다음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가.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 또는

나. 지점이나 대표 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CRS)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 체계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서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인 경우 다음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

- 1)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 2) 가호에 명시된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

법인은,

- 가.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그 법인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익성 있게 소유되는 경우,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된다.
- 나. 당사국의 인이 그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지배된다.
- 다. 자신이 다른 인을 지배하거나 다른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또는 자신과 다른 인이 모두 동일한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그 다른 인과 계열관계에 있다.

조치란 제 1.1 조(일반 정의)에 정의된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하며,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

- 가. 서비스의 구매, 대가 지불 또는 이용
- 나.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그리고
- 다. 상업적 주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주재

독점 서비스 공급자란 당사국 영역의 관련 시장에서 그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당사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승인을 받거나 설립된 모든 공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연인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른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서비스 분야란 다음을 말한다.

가. 구체적 약속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되어 있는, 그 서비스의 하나 이상 또는 모든 하위 분야,

나. 그 외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하위 분야 모두를 포함하는 그 서비스 분야 전체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 가능 조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서비스는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않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소비자란 서비스를 받거나 이용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란 다음을 말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해상운송의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또는 선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 및/또는 사용하여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나. 상업적 주재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인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¹

서비스의 공급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

서비스무역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정의된다.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서비스 공급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다.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그리고

라.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그리고

운송권이란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영역으로, 영역에서 또는 영역 상공으로 대가나 사용료를 목적으로 운항 및/또는 여객, 화물 및 우편을 운송하는 정기적 및 비정기적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여기에는 운항지점, 취항항로, 운송대상의 형태, 운송능력, 부과운임 및 조건, 그리고 항공사의 수, 소유권 및 지배를 포함한 항공사의 지정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다.

제 6.2 조

¹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지 않고 지점이나 대표 사무소 같은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공급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즉, 그 법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재를 통하여 이 장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대우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재에 대하여 확장되며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역 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다른 부분에까지 확장될 필요는 없다.

적용범위

1. 이 장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에 의한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에 의한 조치란 다음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를 말한다.
 - 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 그리고
 - 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또는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 나.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제외하고, 부여방식에 관계없이 항공 운송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항공 운송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 1)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그리고
 -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 다. 해상운송 서비스의 연안운송
 - 라.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 마. 정부조달, 그리고

바.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및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자국 영역에서의 일시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²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제 6.3 조 내국민 대우

1.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³

2. 제 1 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 정부에 대해서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 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3.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동종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 1 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4.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는 그것이 다른 쪽 당사국의

² 특정 국가의 자연인에게 사증을 요구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약속의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³ 이 조에서 상정되는 구체적 약속은 어떠한 당사국으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산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동종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제 6.4 조 최혜국 대우

1. 양 당사국은 부속서 6-라와 6-마의 자국 양허표에 열거되고 ‘최혜국 대우’로 명시된 서비스 분야와 하위 분야에 대하여, 그리고 그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이 비당사국의 동종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비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간 경제통합의 보다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로서 상품이나 서비스무역 또는 투자 자유화에 대한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그 밖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4. 이 장의 규정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의 인접 접경 지대에 국한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당사국이 인접국에 이점을 부여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 6.5 조 시장접근

1. 제 6.1 조에 명시된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의 양허표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⁴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자국의 양허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당사국이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유지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조치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수 또는 서비스의 총산출량에 대한 제한⁵

라.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에 대한 제한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바. 외국인 지분 소유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의 개인별 또는 총액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⁴ 당사국이 제 6.1 조 **서비스무역** 가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하는 경우와 국경 간 자본 이동이 그 서비스 자체의 필수적 부분인 경우, 그 당사국은 이로써 그러한 자본의 이동을 허용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당사국이 제 6.1 조 **서비스무역** 다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로써 자국 영역 내로의 관련 자본의 이전을 허용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⁵ 제 2 항다호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 6.6 조 추가적 약속

양 당사국은 자격, 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 6.3 조 또는 제 6.5 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은 당사국의 양허표에 기재된다.

제 6.7 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제 6.3 조, 제 6.5 조 및 제 6.6 조에 따라 행하는 자국의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규정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 대하여, 각 양허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나. 내국민 대우에 대한 조건 및 자격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

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기간, 그리고

마. 그러한 약속의 발효일

2. 제 6.3 조와 일치하지 않는 조치는 제 6.3 조와 관련된 열에 기재하고, 제 6.5 조와 일치하지 않는 조치는 제 6.5 조와 관련된 열에 기재한다.

3. 제 1 항에 언급된 약속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제 6.4 조에 따라 약속을 행한다.

4. 양허표는 이 장에 부속되어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제 1 항과 합치되게 행해진 구체적 약속에 따라 부여된 대우와 비교하여 새로운 또는 더 차별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없다.

6. 각 당사국은 자국의 양허표에 미래 자유화를 위한 분야와 하위 분야를 'FL'로 명시한다. 이러한 분야와 하위 분야에서, 제 1 항에 언급된 모든 적용 가능한 조건, 제한, 자격 및 약속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 당사국이 유지하는 조치에 제한된다.

7. 당사국이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제 6 항에 언급된 조치와 제 6.3 조 또는 제 6.5 조의 불합치성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제 6 항에 언급된 조치를 개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후에 그 조치와 제 6.3 조 또는 제 6.5 조의 불합치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그 조치를 개정하지 않는다.

제 6.8 조 양허표의 수정

1. 제 6.7 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이 약속의 수정 또는 철회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필요한 보상조정에 이르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요청당사국과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보상조정에 대한 합의에 이를 때까지 자국의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2. 보상조정을 할 때 양 당사국은 그러한 협상 전에 양허표에 규정된 것보다 무역에 더 불리하지 않은 상호 호혜적 약속의 일반적 수준을 보장한다.

3. 관련 당사국들이 보상조정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안은 이 협정의 제 10 장(분쟁해결)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해결된다. 수정 당사국은 중재의 결과에 합치되게 보상조정을 할 때까지 자국의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4. 수정 당사국이 자국의 제안된 수정 또는 철회를 이행하고 중재의 결과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중재에 참여한 다른 쪽 당사국은 그 결과에 합치되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혜택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수정 또는 철회는 수정 당사국에 대해서만 이행될 수 있다.

제 6.9 조

투명성

1. 양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을 규율하는 투명한 조치가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위한 서비스 공급자의 능력을 원활히 하는 데에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서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한다.

2. 각 당사국은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늦어도 발효시점까지 다음을 신속하게 공표한다.

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관련 조치,
그리고

나. 서비스무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이 서명국인 모든
국제협정

3.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제 2 항에 언급된 종류의 조치 및 국제협정이
인터넷에서 그리고, 자국의 국내 법률 체제에 규정된 한도에서, 영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4. 제 2 항과 제 3 항에 언급된 공표가 실행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정보⁶는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5. 각 당사국은 제2항의 의미 내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자국의 조치 또는
국제협정에 관한 특정 정보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답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제6항의 통보 요건에 따른 사안뿐만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정보가 각 당사국이 선택한 언어로 공표될 수 있음에 합의한다.

아니라 모든 그러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설치한다. 그러한 문의처는 이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2년 내에 설치된다.

6.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 이 장에 따른 자국의 구체적 약속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새로운 법, 규정 또는 행정지침의 도입 또는 기존의 법, 규정 또는 행정지침에 대한 모든 변경에 관하여 즉시 그리고 적어도 매년 통보한다.

7.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한 어떠한 조치가 이 장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고려하는 경우 공동위원회에 그러한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제 6.10 조 국내 규제

1.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2. 가.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영향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 절차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유지하거나 수립한다. 그러한 절차가 관련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실제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나. 가호의 규정은 가호의 규정이 자국의 헌법구조나 법체계의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당사국이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 가. 관련 신청 절차의 완료를 위하여 부과되는 모든 승인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그 자체로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이 호의 목적상, 승인 수수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에 대한 수수료, 경매, 입찰이나 그 밖의 허가를 부여하는 비차별적 수단에 대한 지급, 또는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적 출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 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의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통보한다.
- 다.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신청의 처리를 위한 예시적 기간을 수립한다.
- 라.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마. 불완전한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실행 가능한 경우, 신청을 완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다.
- 바. 신청이 종료되거나 거부된 경우,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처분의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리고 과도한 지체 없이 통지한다. 신청인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사.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허용 가능한 한도에서, 면허 또는 자격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물리적 주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 아.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서면 제출과 진정성이 동등한 조건하에서 신청을 전자적 형식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자.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원본 문서를 대신하여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증명된 문서의 사본을 수용한다.

4. GATS 제 6 조제 4 항과 관련된 협상의 결과가 발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러한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결과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그러한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결과가 이 장에 따라 발효되도록 양 당사국 간의 협의 후에 적절한 경우 이 조를 개정한다. 자국의 정책목적에 합치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서비스 공급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그러한 조치가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 그리고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5. 가. 당사국이 구체적 약속을 한 분야에서는 제 4 항에 따라 마련되는 각 분야별 규율이 발효될 때까지 당사국은 그러한 구체적 약속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및 자격요건과 기술표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4항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2) 그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졌을 당시 그 당사국으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

나. 당사국이 제 5 항가호의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
당사국이 적용하는 관련 국제기구⁷의 국제표준이 고려된다.

6.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업인의 자격을 검증할 충분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 6.11 조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한 각국의 표준 또는 기준을
충족할 목적으로, 그리고 이 조 제 4 항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양 당사국 간 또는
권한 있는 관련 기관 간의 협정 또는 약정에 근거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 1 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 자국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경험, 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3. 제 6.4 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하여 그러한 인정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⁷ “관련 국제기구”라는 용어는 적어도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관련 기관에 가입이 개방된
국제기구를 지칭한다.

4.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할 때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않는다.

5. 각 당사국은,

가. 이 협정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부터 12개월 내에 공동위원회에 자국의 기존 인정 조치를 통보하고, 그러한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며,

나.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교섭이 실질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이 그 교섭에서의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사전에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교섭의 개시를 공동위원회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그리고

다. 새로운 인정 조치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인정 조치에 중대한 수정을 가하는 경우 신속하게 공동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6.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나 인정은 다자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은 인정에 대한 국제공통표준과 기준 그리고 관련 서비스무역과 전문직의 수행을 위한 국제공통표준의 수립과 채택을 위하여 관련 정부 간 기구 그리고 비정부 기구와 협력하여 작업한다.

7. 부속서 6-다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 당사국은 전문직 서비스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모든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관련시장에서 독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장에 따른 그 당사국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의 독점 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 밖에 있는, 그리고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공급에서 직접 또는 제휴 법인을 통하여 경쟁을 할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자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약속에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 유지 또는 승인하는 다른 쪽 당사국에 관련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에도 또한 적용된다.

가. 소수의 서비스 공급자를 승인하거나 설립하는 경우, 그리고

나. 자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막는 경우

제 6.13 조

영업 관행

1. 양 당사국은 제 6.12 조에 해당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영업 관행 외의 서비스 공급자의 일정 영업 관행이 경쟁을 제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1 항에 언급된 관행의 폐지를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피요청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부여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협력한다. 피요청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국내 법에 따라, 그리고 요청당사국에 의한 해당 정보의 비밀성 보호와 관련된 만족스러운 합의의 도달을 조건으로, 그 밖의 이용 가능한 정보를 요청당사국에 제공한다.

제 6.14 조 긴급수입제한조치

1. 양 당사국은 GATS 제 10 조에 따라 다자적 포럼에서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포함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한쪽 당사국이 이 장에서의 약속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6.15 조 지불 및 송금⁸

1.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서 자국의 약속과 관련된 모든 송금 및 지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그러한 송금 및 지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의 법과 규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 또는 지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7-다(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이 조에 적용된다.

- 가. 과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 다. 형사범죄
- 라.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판결의 준수 보장
- 마.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 바. 과세, 또는
- 사. 피고용인의 퇴직금

제 6.16 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인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 가. 비당사국의 인이 그 법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그리고
- 나.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법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법인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2. 당사국은 다음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에 대한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 가. 비당사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그리고

나. 선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 및/또는 사용하는 비당사국의 인

3.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인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법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법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사실을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아는 경우, 혜택부인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제 6.17 조 점진적 자유화

양 당사국은 제 13.5 조(협정의 검토)에 따른 검토 시에 양 당사국 간의 서비스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기 위하여 이 장에 따른 구체적 약속을 추가적으로 교섭하기 위한 순차적인 협상을 개시한다.

제 6.18 조 협력

양 당사국은 기존 협력 약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분야들을 포함하여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 노력을 강화한다. 양 당사국은 협력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고 상호 합의하며, 양 당사국의 국내 역량, 효율성 및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러한 분야에서의 협력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